

## 2026 한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정오표(2026.04.14. 기준)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19	<p><b>2. 구성 및 임기</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ce4ec;">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성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 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위원장</td> <td></td> <td>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원</td> <td></td> <td>1.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수	구성원	임 기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1.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p><b>2. 구성 및 임기</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ce4ec;">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성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 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위원장</td> <td></td> <td>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원</td> <td></td> <td>1.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수	구성원	임 기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1.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구 분	수	구성원	임 기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1.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구 분	수	구성원	임 기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1.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19 날개	01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01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2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5 상단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함.....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함.....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25 하단	<p><b>3.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령 제15조)</b></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p>	<p><b>3.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령 제15조)</b></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p>																																
26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56	<p>2. 고용조정 지원(법 제21조, 령 제18조 ~ 령 제22조의2)</p> <p>(1) 의의</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사업주에게</u>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근로자에게도</u>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0분의 50미만, 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도 포함.</p> <p>② 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장관은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u>업종에</u> 해당하거나 <u>지역에</u>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그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를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p>	<p>2. 고용조정 지원(법 제21조, 령 제18조 ~ 령 제22조의2)</p> <p>(1) 의의</p> <p>① <b>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0분의 50미만, 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도 포함.</b></p> <p>② 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b>장관은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b>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p> <p>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b>업종에</b> 종사하거나 <b>지역에</b> 있는 경우</p> <p>2. <b>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b></p>
65	<p>② 대체인력지원금</p> <p>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인수인계기간 : 대체인력지원금의 100%</li> <li>•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li> </ul>	<p>② 대체인력지원금</p> <p>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을 갖추면 아래 항목에 대하여 100% 지급</li> <li>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li> <li>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li> <li>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li> </ul>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146	<p>1. 구성</p> <p>② 비상임이사(당연 비상임이사 제외)는... (노동추천, 사용자추천) 비상임이사는... 아니다.</p> <p>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p> <p>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1. 구성</p> <p>② 비상임이사(당연 비상임이사 제외)는...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야 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p> <p>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4. 3년 이상 재직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p>																
204 날개	19)업무상질병은 해당 없음	19)업무상질병은 해당 없음																
213	(1) 적용제외자(령 제2조)	(1)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령 제2조)																
231	tip박스 평균임금 산정방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	tip박스 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																
248	<p>(2) 보험료율</p> <p>② 사업장가입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 금액 - 각각 기준소득월액 1천분의 45</td> </tr> </tbody> </table> <p>③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 금액 - 각각 기준소득월액 1천분의 45	구분	내용		•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	<p>(2) 보험료율</p> <p>② 사업장가입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 금액 - 각각 기준소득월액 1천분의 65</td> </tr> </tbody> </table> <p>③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 금액 - 각각 기준소득월액 1천분의 65	구분	내용		•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
구분	내용																	
	• 금액 - 각각 기준소득월액 1천분의 45																	
구분	내용																	
	•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																	
구분	내용																	
	• 금액 - 각각 기준소득월액 1천분의 65																	
구분	내용																	
	•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																	
259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9	<p>3. 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102조)</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차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p>	<p>3. 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102조)</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p>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260	6. 기금 운용계획 등(법 제107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금 운용계획 등(법 제107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1	(1) 임원(법 제20조) ② 이사장은 임원 ...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임원(법 제20조) ② 이사장은 임원 ...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97	4. 임원(법 제65조) ③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임원(법 제65조) ③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26	1. 의의(법 제9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간주	1. 의의(법 제9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간주
327	tip박스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tip박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332	② 예외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가 성립한 후 ... 결정(법 제14조 제4항)	② 예외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 결정(법 제14조 제4항)